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 중 소득 보전을 확대하여 공무원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고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에도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 수당 전액을 지급하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을 인상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상한을 인상하며, 육아를 이유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한 공무원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수당 상한액을 인상하는 한편,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한부모 및 장애아동 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유급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본문 중 “육아휴직 시작일”을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 160만원

제11조의3제2항제1호가목 후단 중 “200만원”을 “25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후단 중 “25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를 “공무원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중 “근로시간”을 각각 “근무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	$\frac{\text{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2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times \frac{\text{시간으로 한다)}}{\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	$\frac{\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10(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시간으로 한다)} \times \frac{\text{시간으로 한다)}}{\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제11조의3제6항 본문 중 “근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및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근로시간”을 각각 “근무시간”으로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며,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제2항제1호나목·제2호나목의 “12개월째”는 “18개월째”로 본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제23조의2제2호 중 “제11조의3제7항”을 “제11조의3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의 이 영 시행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두 번째 육아휴직 공무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2항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이 영 시행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부모가족 공무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부터 적용한다.

제5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간선택제 전환을 허용받아 개시한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남아 있는 시간선택제 전환 기간에도 적용한다.

제6조(육아휴직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의 이 영 시행 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두 번째 육아휴직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의 경우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확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1조의3제7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를 목적으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기간을 합산하여 18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제11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 ----- ----- -----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 ---.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 160만원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② ----- ----- ----- -----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1. ----- ----- ----- ----- -----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1개월째는 <u>200만원</u> , 2개월째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가. ----- ----- ----- ----- ----- <u>250만원</u> ----- ----- -----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 ----- -----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가. ----- ----- ----- -----.

우 그 상한액은 <u>250만원</u> 으로 한다.	----- <u>300만원</u> -----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③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삭 제>
1. 첫째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지급액으로 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2. 둘째 이후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을 매월 지급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퇴직하거나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삭 제>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⑦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⑥ ----- 근무시간 -----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며,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제2항제1호나목·제2호나목의 “12개월제”는 “18개월제”로 본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 아동의 부 또는 모 ⑧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⑧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23조의2(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이 영을 시·도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제7조의2제11항, 제10조제6항·제10항, 제11조의3제7항 및 제15조제8항 중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도지사”로 본다.	----- ----- 근무시간 ----- -----. ⑨ ----- 근무시간 ----- -----. 제23조의2(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 -----. 1. (현행과 같음) 2. ----- 제11조의3제8항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44) 201 - 8397